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23 선고 2020나6659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# 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23 선고 2020나66598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14 선고 2019가단5136709 판결

### 전문

원고,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A

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

담당변호사 정우근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21. 10. 19.

판결 선고 2021. 11. 2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14. 선고 2019가단5136709 판결

### 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. 8. 3. 체결된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8. 10. 29. 접수 제196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1)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'2019. 5. 14.'을 '2019. 3. 26.'로 고쳐 쓰고,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정진원

판사이상률

판사권소영

별지

1)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에 민법에 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한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는 취지의 2020. 11. 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. 그러나 보조참가는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어(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) 피참가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소의 변경, 확장과 같은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(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6다카2329 판결 참조),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청구취지

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